

제41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1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	3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3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	3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3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	3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3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	3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9.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3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3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3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3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3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3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3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4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4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4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4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4

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4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4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4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4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4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4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4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4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4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
-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 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08분)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2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원안 의결, 6건을 수정 의결하고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료제출 의무의 수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진흥을 지원하도록 하되 그 내용에 간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간접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미 한국ABC협회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콘텐츠의 정의에 실감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공립미술관,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과 사전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되 설립타당성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자체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김재원 의원안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에 관한 나머지 개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동진·서지영·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콘텐츠의 범위에 신기술 활용 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정부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정비하여 합의권고,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소송절차 중지 등 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속기관인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한국문학번역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이기현·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부담을 완화하며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별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표 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표조사는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수현·신동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자연재해로 훼손된 경우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하여 현황조사, 개선방안 권고 및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정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과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 황희 의원, 진종오 의원, 신동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 등 모두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대해 현행의 징계 요구 외에도 권고,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조치 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제한적으로나마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으로 확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등 모두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해당 업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둘째 다자녀가구의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관광 분야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셋째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관광지·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여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3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고,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9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3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5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하 소위원장님, 임오경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2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한 공립박물관·미술관을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게임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강화 또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의 차질 없는 준비,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체육계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장님, 임오경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유인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천 국가유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복구에 필요한 경비 지원, 민간에서 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최용천 국가유산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수현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2024년 11월 24일 자로 사도 광산 추도식이 불발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2024년 7월 25일 날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를 시켰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제2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으로 일컬어지는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체부장관님과 유산청장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련 부처 협의회에서 유인촌 장관과 최웅천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 등의 이런 질의나 요청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꾸준하게 그런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분께는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외교부가 외교 전략의 부재 또는 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이런 외교 참사를 안겨 준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측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인사라는 점이 우리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참으로 모욕적이라고 보는데,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추도식을 주최한다는 점, 추도식 공식 명칭에 ‘조선인’,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진 점, 통상 초청에 따른 제반 경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유가족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일 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점, 일본 정부 대표로 정무관을 참석시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참석자 이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개최일도 일본 측이 당초 합의했던 내년 7~8월 중보다 3개월여 미뤄진 시점에 이루어진 점, 개최일까지 나흘 앞둔 시점에서 양국 정부 대표가 낭독할 추도사 내용과 식순도 조율이 없었다고 한 점, 일본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외교부가 기자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했던 브리핑이 두 차례 취소되는 이례적 해프닝까지 연출한 점, 특히 추도식 개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예정된 브리핑이 시작 5분 전에 외교부의 자체 결정으로 폐지된 점 또 지난 20일 밤에는 일본 측이 한국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불참으로 입장문을 번복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점.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도사에 강제성과 사과와 관련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행사 참석자 주요 발언을 보면 이쿠이나 정무관은 사도 광산이 역사상 특히 주목해야 할 가치라고 말하며 강제동원 같은 노역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와타나베 사도시장도 지역의 자랑이자 세계의 보물로 등재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추도식을 지켜본 아라이 마리 사도시의원은 한국 측이 참가했어도 일본 측과 한마음으로 추모하는 자리가 됐을지 의문이라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백미는 주한국 일본대사관의 유감 표명입니다. ‘한일 정부 간 정중한 의사 소통을 해 왔다. 한국 측 불참에 유감스럽다’, 일본 측이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다고 하는데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도식에 얼마나 무성의하고, 의미를 격하시키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등의 희생 노동자들을 기리겠다며 마련된 사도 광산 추도식이 세계유산 등재 자축연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 언론 기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참석자를 포함한 추도식 준비 과정에서 강제노역을 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진정성 있는 조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면서 총체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광산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지금도 최선을 다했다고 제가 아까 평가를 해 드렸습니다만 더욱더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형인 아시오 광산, 구로베 댐 등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예산 7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현재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 요구 제출 중인데 이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서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위원장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문체부장관님, 이 사도 광산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번 추모식 문제는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는 전혀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사실은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조율이 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법한 일인데도 이렇게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는 하여간 문화적인 여러 그런 접근으로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배현진 위원 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방금 전 발언하신 박수현 위원님의 모든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오늘 사도 광산 추모식에 우리 정부가 또 유족들과 함께 끝끝내 불참하게 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생각 드립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 또 여기 계시는 최웅천 청장님께, 두 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사도 광산 등재 과정에서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외교부의 판단 과정에 그 의견을 외교부 쪽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들, 이번에도 통보받지 못했다라는 말씀들은 국민들이 듣기에 굉장히 상처되고 또 실망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산청이, 저희 의원실에서도 21대 때 공들여 만들었던 세계유산해석센터가

충청도에,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서 다시는 국민들께 이러한 실망감을 안겨 드리지 않도록 문체부에서 또 국가유산청에서도 더욱더 힘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일본 이시바 정부가 굉장히 한국과 친밀한 정부일 거라는 기대감 속에 국민들께서 지난번 총리 선거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한일의원연맹의 일원들이시기 때문에 문체부의 성원들로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했다면 저희가 의원 간의 어떤 문화외교로라도 많이 풀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드리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던 일본이 2015년부터 누누이 그 역사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성토하며 오늘 같이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오늘 박수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두 분께서 사도 광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발언하시지 않은 여야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2015년도의 군함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외교적으로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것은 무슨 말로도 아마 핑곗거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은 외교부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관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의 책임도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 주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최용천 국가유산청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님,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유정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제1차관 융호성
제2차관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정책기획관 이정미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 윤태욱
체육국장 강수상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4. 11. 1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5)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2)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2024. 11. 21.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11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